대학간 학 · 석사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정 2023.08.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호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국내 다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의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이라 함은 대학 재학생 중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에 이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이수 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위 간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연계학기라 함은 연계과정의 6학기(3년 2학기), 7학기(4년 1학기), 8학기(4년 2학기)로서 학사과정 교과목과 석사과정의 지정 교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함으로써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시키는 학기를 말한다.

제3조(협약체결) ① 본 대학원과 대학간 학·석사연계과정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대학은 국내 소재 대학에 한한다.

②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지원자격
2. 학생 선발 방법
3. 모집 단위 및 모집인원
4. 인정 교과목 지정 및 이수 학점
5. 강좌개설 및 운영
6. 수강 및 학생지도
7. 강의 영상 지적 소유권 및 강의료

제4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4년(8개 학기)
2. 석사과정: 1년(2개 학기)

제5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6개 학기(3학년 2학기) 이수자로서 해당과정의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학사과정 6개 학기의 총 평점평균이 3.2 이상인 자
3.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석사과정 지원 가능학과는 학사과정과 동일계열에 한한다. 단, 본 대학원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을 본 대학원에서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서류) 대학의 장은 소정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연계과정 지원서 1부.
2. 학부(과)장의 추천서 1부.
3. 학업계획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제7조(선발시기 및 방법) ① 연계과정 학생모집은 연계학기 개시 60일 전에 공고하고 매학기 말까지 1회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정원에 미달될 때는 추가모집하거나 미달된 정원을 정시모집으로 돌릴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과정 재학 중 성적, 학부(과)장 추천서, 학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면접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신청자에 대한 전형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고 그 결과를 대학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8조(모집단위와 모집인원) ① 연계과정의 모집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한한다.
② 연계과정 모집단위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학과(간호학과, 건축학과 제외)로 한다. 다만, 학과의 사정에 따라 모집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각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8. 26)

제9조(지도교수) 대학원장은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발된 학기 초에 석사과정 지도교수를 위촉한다.

제10조(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대학 졸업이수학점 외에 대학원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 학점으로 9학점까지 인정한다.

제11조(석사과정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확인서(별지 서식 1)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1. 〈삭제 2024. 8. 26〉
② 연계과정 학생은 당해연도 신입학 전형 일정에 따라 원서접수를 해야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학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과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6)
④ 석사과정 첫 학기와 두 번째 학기는 질병과 입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4. 8. 26)

제12조(연계과정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1. 석사과정 진입 이전에 연계과정을 포기원을 제출한 자.
2. 8학기까지 학사과정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대학에서 석사과정 지정교과목 9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13조(특전) 연계과정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한다.
1. 석사과정 입학시험 면제
2. 석사과정 입학금 면제

제14조(준용규정) ① 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소속 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석사과정 진입 후에는 본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부 소속 대학의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과 본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23.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협약은 본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적용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제2조2항 및 제4조1항의 적용은 학사과정 3학년 1학기부터 허용하며, 반드시 지정교과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

부 칙(2024.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석사과정 입학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별지 서식 1] (신설 2024. 8. 26)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확인서

1. 인적사항

대학명			
소 속	(대학/학부・과・전공)		
성 명		학 번	
학・석사연계과정 선발학기	20 년 학기		
졸업예정 년월	20 년 월		

2. 이수현황

취득학점		평점평균		이번 학기 신청학점		총 이수학점	
		전체	전공				
학 부	학점	/4.5	/4.5	학 부	학점	학 부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계				계		계	

상기와 같이 대학간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중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학과(부)장 : (인)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귀하